

2017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7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급	직렬	직 류 (구분)	선 발 예 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계				93명	
제2회 임용 시험	공개 경쟁	9급	사회 복지	85	목포시 7, 여수시 3, 순천시 10, 나주시 6, 광양시 4, 담양군 3, 곡성군 3, 구례군 4, 고흥군 2, 보성군 3, 화순군 3, 장흥군 2, 강진군 3, 해남군 3, 영암군 1, 무안군 4, 함평군 6, 영광군 3, 장성군 5, 완도군 2, 진도군 3, 신안군 5
				6	도일괄 6 (목포시 1, 여수시 2, 담양군 1, 해남군 1, 영광군 1)
				2	도일괄 2 (순천시 1, 완도군 1)

※ 도일괄 모집 분야(저소득층 및 장애인)는 해당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별도 기준에 따라 ‘괄호’ 에 기재된 임용예정 기관에 배정합니다.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시험과목	시험시간
제2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10:00~11:40 (100분/5과목)

가. 선택과목 중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나.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다. 선택과목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및 [별표10]에 따른 선택과목 조정 점수가 적용됩니다. 단, 조정점수 산출을 위한 평균점 및 표준편차는 비공개 합니다.

라.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여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 하지 않습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4지택1형/과목당 20문항/100점 만점)

나. 서류전형: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다. 제3차시험: 면접시험

※ 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1·2·3급

- 1)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증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 2) 원서접수일 현재 **자격증 소지자는 원서접수 시 자격증 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자격증 미소지자는 원서접수 시 자격증 취득 예정일자(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필기시험 종료 후 자격취득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응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3)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소지 여부는 자격증 발급 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발급 신청 이후 발급(취득)일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면접시험일 최종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일반모집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4)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5)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별첨1)**’를 참조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아래 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구비서류 제출기간: 2017. 2. 6.(월) ~ 2. 13.(월)
- 등기우편 접수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총무과 고시팀

- 우편접수는 2. 13.(월)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우편물 도착여부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계속성을 인정)
- 3)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일반모집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바. 성 별: 제한이 없습니다.

사. 거주지 제한

2017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도일괄 및 일반 시·군 응시자** *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제외

-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응시자**

-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으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잔여일수가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이면 충족합니다.

☞ 예) 1986. 11. 1.이전 '전라남도 광주시' 거주 사실은 현재의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사실로 인정되어 전라남도내 거주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개인별주민등록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단계별 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2회 임용시험	2016. 2. 6.(월) ~ 2. 10.(금) *취소마감 : 2. 13.(월) 21:00	인터넷 으로만 접 수	필기시험(1·2차)	3. 29.(수)	4. 8.(토)	4. 28.(금)
			면접시험(3차)	4. 28.(금)	5. 18.(목)	6. 1.(목)

- ※ 서류전형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www.jeonnam.go.kr) 『[시험정보](#)』란에만 공고합니다.(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취소기간

- 1) 접수방법: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2) 접수 및 취소기간(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 험 명	응 시 원 서		접수 · 취소시간
	접 수 기 간	취 소 기 간	
제2회 임용시험	2017. 2. 6.(월) ~ 2. 10.(금)	2017. 2. 6.(월) ~ 2. 13.(월)	09:00~21:00

※ 응시원서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 3) 응시수수료: 9급 5,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전화] 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결제하여야 하고, 원서접수 종료 후 대상자 확인 후 환불)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1) 전라남도인사위원회 및 전라남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2)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분야를 변경할 경우에는 접수기간 내에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단, 가산점 등록 및 수정은 필기시험일 전일(4. 7.)까지 가능합니다.
- 3)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오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파일(JPG) 규격: 3.5cm×4.5cm기준, 해상도 100DPI이상

-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이 가능한 사진(6개월 이내 촬영)이어야 하며, 향후 서류 전형 및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4)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5) 자격·면허증, 거주지제한, 가산특전, 장애인등록증, 저소득층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별도로 지정하는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원서접수 시 임용예정기관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일괄 모집분야** 응시자는 임용예정기관을 선택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응시장소(목포 또는 순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7) 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필기시험 장소공고일 이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적용시험 단위: 임용예정기관의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다.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라. 합격자 결정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에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 인원만큼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양성평등 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상분야: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단위

나. 적용방법: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단,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선발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보건복지부(☎ 044-202-3258)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위의 1)항과 2)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가산 선택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직 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u>정보보안기사</u>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 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u>정보보안산업기사</u>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리 분야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워드프로세서 2급·3급은 가산대상 자격증이 아닙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응시자가 다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직 류)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사회복지(사회복지)	변 호 사	5%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 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OMR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및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산자격을 입력하지 않거나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자격번호, 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2)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직렬별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가. 응시원서 착오기재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기재)]**,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다. **답안카드에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용할 경우 해당문항 무효처리)**
-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전자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실내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시험시작 후 소지하였다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험에 있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연령·거주지·가정·학력·경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사. 응시한 임용예정기관(시·군)의 직급·직렬(직류)별로 경쟁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단, **도일괄** 모집 분야는 해당 분야별로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임용예정기관을 배정합니다.

아.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 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 제한 및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단, 임용예정기관에 따라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따로 정함)

- 단,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은 5년 동안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응시자격 미충족,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되지 않거나 합격이 취소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제한 자격증 정보 사전입력

-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증 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자격증 미소지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자격증 취득 예정일자(면접시험 최종일 이전)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미 입력 시 원서접수 불가)

나. 가산특전에 대한 가산표기 및 가산점 사전입력

- 2017년도 제2회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자격 내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전일까지만 입력(수정) 가능하며, 필기시험 OMR답안지에 가산표기란 없음

다. 추가합격제 실시

-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에서 과락(공개경쟁 - 각 과목 4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총무과 고시팀(☎061-286-337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전남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sihum.jeonnam.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고·안내사항은 전남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sihum.jeonnam.go.kr>)」에 공지합니다.